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30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전진숙·박희승·서미화

김선민 • 이수진 • 백혜련

임호선ㆍ김 윤ㆍ남인순

임광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유사한 직무임에 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고용안 정과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장기간 근속할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이나 복지 혜택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으로 채용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을 제3조의7로 하고,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3(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복지사 등이 담당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직급의 사회복지사 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년 이상 지원되는 사업의 담당자에게 차년도 보조사업비의

-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가 인상되어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의 장기근속휴가 지원) ①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휴가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사회복지 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의6(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생 략) 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 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 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 ③ 사회복지법인 등은 국가 또 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할 사회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복지사 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노력하여야 한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으 로 채용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 한 수준의 보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 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 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 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 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 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 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

 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 3. (생략)
- ③ ④ (생 략)

<신 설>

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
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
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
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2) -----
- 1. (현행과 같음)
-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 한 사항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

 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복지사 등이 담당하는 사 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직 급의 사회복지사 등에게 같거 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년 이상 지원되는 사업의 담당자

<신 설>

에게 차년도 보조사업비의 인 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 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가 인상 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2항 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 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 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의 장기 근속휴가 지원) ① 사회복지법 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 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장기근속휴가를 부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장기근속휴가를 성 실히 이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사 등의 업무 현장에서 사회복 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신 설>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6(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회복지 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 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 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 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 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u>제3조의3(</u>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워센터) (생 략)

제3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 (현행 제3조의3과 같 음)